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『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』 특약
-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 1조 ~ 제 6조 <생 략></p> <p>제 7조 우대금리 <생 략></p> <p>(주) 급여입금 인정 기준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,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(급 여, 월급, 연봉, 봉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bonus 등)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</p>	<p>제 1조 ~ 제 6조 <좌 동></p> <p>제 7조 우대금리 <좌 동></p> <p>(주) 급여 인정 기준</p> <p>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 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 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p> <p>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p> <p>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 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p> <p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 성 적요는 제외</p> <p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p>	급여인정 기준확대
<p>제 8조 ~ 제 9조 <생 략></p> <p>부칙 <신 설></p>	<p>제 8조 ~ 제 9조 <좌 동></p> <p>부칙</p> <p>1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 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p>	부칙추가